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알림] 「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개정사항 안내

1. 관련: 행정과-3947(2021. 6. 9.)
2. 「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(2021. 6. 10. 공포,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807호)의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,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개정사항(2021. 6. 10. 시행)
 - **당직근무자의 휴무 확대 운영**: 기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휴무를 당직근무자로 확대 (**당직 휴무 대상에 일직근무자를 포함**)
 - ※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* 이내에 1일 휴무 가능
 - * 5일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
 - 나. 전문 검색 방법
 -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→ 자치법규 → 검색
 - 교육행정포털(www.info.go.kr) → 법무행정 → 자치법규 → 법규검색. 끝.

본 공문은 공문게시판에 게시합니다.

경상북도교육감인

수신자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(교육전문위원), 본청 관 및 과장, 직속기관장, 교육지원청교육장(소속기관 포함), 공립 단설 유치원장, 공립 초·중·고등학교장, 공립 특수학교장

★주무관

이진하

인사담당

장중찬

총무과장

전결

2021.06.10.

민병열

협조자

시행 총무과-8900

(2021. 6. 10.) 접수

()

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(풍천면)

/ <http://www.gbe.kr/>

전화 054-805-3626

/전송 054-805-3619

/haaiming@gbe.kr

/ 공개